

등록번호	총무과-43249
등록일자	2014.12.10.
결재일자	2014.12.1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인사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★구청장
도혜진	남종운	유용렬	代유용렬	김찬곤	전결 12/11 최창식
협 조					

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계획

서울의 중심
중구



행 정 관 리 국
총 무 과

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계획

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(명예퇴직 등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(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4(특별승진임용)
-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, 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) 등

II 추진방향

- 제2의 인생설계 실현을 위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고
- 예측되지 않은 명예퇴직 신청자의 급증 시,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

III 추진계획

- 신청대상** : 2015년 內 명예퇴직 희망자
 -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

※ 제외대상

-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-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-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
□ 운영방법 : **(1차)수요조사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(2차)수요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함**

□ 신청기간 : **(1차)년 1회 신청 ⇒ (2차)분기별 신청**

구분	운영	대상	신청기간	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
(1차) 수요 조사	년 1회	2015년 내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1.1.~12.31.)	2014.12.31.~2015.1.29. (30일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예퇴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모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나, ○ 신청자가 많아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<p>※근거 :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2항</p>
(2차) 수요 조사	분기별	2분기 내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4.1.~6.30.)	2015.3.12.~2015.3.31. (20일간)	
		3분기 내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7.1.~9.30.)	2015.6.11.~2015.6.30. (20일간)	
		4분기 내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10.1.~12.31.)	2015.9.11.~2015.9.30. (20일간)	

□ 처리절차

절차	내 용
신청서 제출 희망직원→소속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[붙임1~6]를 작성하여 제출
↓	
신청서 송부 소속부서→총무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를 취합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사전 검토 후, 신청기간 내에 공문 제출 ※ 소속부서장의 결재가 완료된 공문에 한함
↓	
2015년 內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명단 확정 총무과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padding: 5px;"> 명예퇴직 희망 신청자가 많아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명단 확정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: 상위계급의 공무원 - 2순위 :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 - 3순위 :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- 4순위 :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↓	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·결정 총무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위사실 및 결격사유 조회 ○ 서울시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의 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예퇴직 대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- 특별승진 임용 결정(※특별승진 임용일 : 명예퇴직일) ○ 결정기간 :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※ 소속기관(부서)장과 비위사실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에서는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총무과에 통보
↓	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총무과→소속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○ 명예퇴직일 : 신청인이 지정한 날

※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

- 대상 :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
- 기간 :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~ 명예퇴직일까지
- 사유 : 지급대상 제외사유 발생 시

□ **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및 방법**

○ 지급기준

구분	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호봉제 적용 대상자	1년 이상~5년 이내	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 × 정년 잔여월수
	5년 초과~10년 이내	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 × [60 + (정년 잔여월수 - 60) / 2]
	10년 초과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
연봉제 적용 대상자	1년 이상~5년 이내	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 × 정년 잔여월수
	5년 초과~10년 이내	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 × [60 + (정년 잔여월수 - 60) / 2]
	10년 초과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

○ 지급방법 : 명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

□ **2015년 예산액 : 637,980천원**

- 예산과목 : 총무과, 행정운영경비(총무과), 인력운영비(구·동직원), 인건비, 보수

IV 기타사항

□ **명예퇴직수당의 환수대상**

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

-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
 -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
 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(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)으로 재임용된 경우
- ※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.

V 행정사항

- **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여부 조회 --- 감사담당관**
- **2015년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등 신청서 제출 ---- 전 부서**
 - 기간 : 신청기간 내
 - 신청서 : [붙임 1 ~ 붙임 6]
- **명예퇴직수당 지급 ----- 총무과**
 - 기간 : 명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 명단

(부서명 :)

소속 (직위)	직급 (현직급임용일)	성명 (주민등록번호)	정년 퇴직일	정년 잔여기간	근속기간		수당지급 예정액 (호봉)	퇴직당시 월봉급액
					정규	연금법상		

※ 전경력합산의 경우 연금법상 합산여부 반드시 확인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5. . .

확인자 직 성명 (인)

* 확인자는 소속부서장임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①소 속		②공무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직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직 (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직	③직(계)등급	(호봉)
④성명	한 글	⑤주민등록번호			
	한 자	⑥주 소			
⑦전화번호 (자택)		⑧근속기간	년 월	⑨정년일	년 월 일
⑩정년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령정년 <input type="checkbox"/> 계급정년		⑪수당청구액		
⑫정년잔여기간 (지급대상기간)	년 월		⑬산출내역		
⑭계좌번호	(은행), 계좌번호 :				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지급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따로붙임 1. 인사기록카드 사본(원본대조확인) 1부 2. 공무원연금카드 사본(원본대조확인) 1부 3. 명예퇴직원 1부					
2015. . .					
신 청 인 (인)					
⑭ 확 인 인사담당		(인)	연금담당	(인)	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	
2015. . .					
소속부서(기관)의 장 인					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					

주)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.

작성요령

1. ②는 해당란(□)에 √ 표시하고,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기재함
2. ③은 정확한 직급 기재
3.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,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
4. ⑩은 해당란에 √ 표시함
5.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,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
6. ⑧,⑨,⑩,⑪,⑫,⑬은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
7.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
8.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,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하되,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

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

대상자 인적사항	소 속 :											
	직 급 :											
	성 명 :											
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	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	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										
	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	"										
	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	"										
	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자	"										
	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간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	"										
	특별훈련경비 반납대상자	"										
	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	"										
<p>조사작성 및 확인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월 일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부서(기관)명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직위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직급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right;">(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소속부서장)</td> </tr> </table>			부서(기관)명	직위	직급	성명	(인)		(소속부서장)			
부서(기관)명	직위	직급	성명	(인)								
	(소속부서장)											

명 예 퇴 직 원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
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명예퇴직 사유(구체적) :

※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 명시

○ 명예퇴직 신청일 :

○ 명예퇴직 희망일 :

2015년 월 일

신 청 인

(인)

서울특별시 **중구청장** 귀하

퇴직자 보안서약서

본인은 2015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.
2.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.
3.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.

2015 년 월 일

서약자 : 소속	직	성명	(인)
서약집행자 : 소속	직	성명	(인)

서울특별시 **중구청장**귀하

명예퇴직자 확약서

소 속 :
직 급 :
성 명 :

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 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,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 및 총무과에 신고하겠습니다.

- 가.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않음
- 나.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지 않음
- 다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지 않음
- 라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지 않음
- 마. 국가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지 않음
- 바. 퇴직 후 공시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있지 않음.

2015년 월 일

명예퇴직 신청자

(인)

서울특별시 **중구청장**귀하

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(안)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신청대상

-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)
-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제1항의 해당자 중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(정무직공무원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이후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자 포함

【 제외 대상자 】

-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-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-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
2. 신청기간 및 절차 등

- 운영방법 : (1차)수요조사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(2차)수요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함
- 신청기간 : (1차)년 1회 신청 ⇒ (2차)분기별 신청

구분	운 영	대 상	신청기간	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
(1차) 수요 조사	년 1회	2015년 內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1.1.~12.31.)	2014.12.31.~2015.1.29. (30일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예퇴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모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나, ○ 신청자가 많아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※ 근거 :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2항
(2차) 수요 조사	분기별	2분기 內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4.1.~6.30.)	2015.3.12.~2015.3.31. (20일간)	
		3분기 內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7.1.~9.30.)	2015.6.11.~2015.6.30. (20일간)	
		4분기 內 명예퇴직 희망자 (2015.10.1.~12.31.)	2015.9.11.~2015.9.30. (20일간)	

□ 처리절차

절 차	내 용
신청서 제출 (희망직원→소속부서)	○ 2015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[붙임1~6]를 작성하여 제출
신청서 송부 (소속부서→총무과)	○ 신청서를 취합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사전 검토 후, 신청기간 내에 공문 제출 ※ 소속부서장의 결재가 완료된 공문에 한함
2015년 內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명단 확정 (총무과)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명예퇴직 희망 신청자가 많아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명단 확정 </div> ○ 심사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: 상위계급의 공무원 - 2순위 :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 - 3순위 :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- 4순위 :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·결정	○ 비위사실 및 결격사유 조회 ○ 서울시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의 심사 - 명예퇴직 대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- 특별승진 임용 결정(※특별승진 임용일 : 명예퇴직일)
(총무과)	○ 결정기간 :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※ 소속기관(부서)장과 비위사실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에서는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총무과에 통보
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(총무과→소속부서)	○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○ 명예퇴직일 : 신청인이 지정한 날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	
· 대상 :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	
· 기간 :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~ 명예퇴직일까지	
· 사유 : 지급대상 제외사유 발생 시	

3.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및 방법

□ 지급기준

구분	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호봉제 적용 대상자	1년 이상~5년 이내	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 × 정년 잔여월수
	5년 초과~10년 이내	월봉급액(기본급)의 68%의 반액 × [60 + (정년 잔여월수-60)/2]
	10년 초과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
연봉제 적용 대상자	1년 이상~5년 이내	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 × 정년 잔여월수
	5년 초과~10년 이내	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의 반액 × [60 + (정년 잔여월수 - 60)/2]
	10년 초과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

□ 지급방법 : 명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

4. 명예퇴직수당의 환수

□ 환수대상

○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-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
 -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
 -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
 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경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(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)으로 재임용된 경우
- ※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.

5. 행정사항

-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여부 조회 ----- 감사담당관
- 2015년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등 신청서 제출 ----- 전 부서
 - 기간 : 신청기간 내
 - 신청서 : 붙임 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 명단
 붙임 2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 붙임 3.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
 붙임 4. 명예퇴직원
 붙임 5. 퇴직자 보안서약서
 붙임 6. 명예퇴직자 협약서
- 명예퇴직수당 지급 ----- 총무과
 - 기간 : 명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